

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1. 11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
조치법 제3조에 의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 및 균형 발전
시책등의 지원과 기관 단체·대학 및 중소기업자 간의 상호 협력증진
위한 제도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 요 내 용

-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경제 활성화의 목적(제1조)
- 중소기업육성 및 기반산업진흥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필요한
사업비를 출연 및 보조(제3조)
 - 기술개발, 창업보육센터, 정보화 촉진 및 중소기업자단체 육성 등
- 사업 추진(제4조~제14조)
 -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와 중소기업 창업 지원
 - 중소기업 경영안정 사업 및 중소기업협의회 구성·사업등

3. 참 고 사 항

-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3조
-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

구미시중소기업육성및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중소기업자의 상호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업활동을 적정하게 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” 및 “중소기업자” 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)을 말한다.
2. “중소기업자단체” 라 함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말한다.
3. “기술개발” 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·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대학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 (육성 및 지원등) ①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기반산업진흥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, 창업보육센터, 정보

화 촉진, 경영안정,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자단체 육성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.

제 2 장 중소기업 구조고도화

제4조(중소기업 정보화 사업)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
2. 중소기업의 포털사이트 구축 및 활성화
3.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사업
4. 기타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유관기관·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술개발 사업)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지원사업
2.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
3.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
4.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·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단체와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사업 등을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6조(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)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,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 3 장 중소기업 창업지원

제7조(창업지원계획 수립) 시장은 신지식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8조(창업보육센터 운영등) ①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·인력·기술·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 조성과 창업보육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 도모와 근로자들의 향학 기회 제공을 위한 산·학·관 간의 공동 협약으로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및 인력 양성 과정을 관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직접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벤처기업 육성) ①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벤처집적시설(벤처타운)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③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·자금·인력·기술 및 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간의 협력체를 구성하는데 적극 지원한다.

제 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

제10조(경영지원)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,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판로지원)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기업화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
2. 중소기업 해외 박람회참가 지원
3.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등

②시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개발, 기술인증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관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 5 장 중소기업협의회 구성 및 사업

제12조(중소기업간의 협력)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지역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단체를 육성하고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

제13조(구성 및 운영)①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이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4조(기능 및 사업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추진한다.

1.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2.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기관단체 및 기업간에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3. 중소기업의 자금·인력·기술 및 정보등 경영애로에 관한 지원 사항

4.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치단체,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건의사항
5. 기타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.